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검토보고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3159호
- 나. 제안자 : 허훈 의원 외 15명
- 다. 제안일 : 2025년 10월 17일
- 라. 회부일 : 2025년 10월 23일

### 2. 제안이유

- 도시계획위원회로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합(25.7)함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위원회로 개편 예정임
- 심도있고 신속한 심의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고정된 위원을 두지 않고 개최 시 상정 안건에 따라 해당 안건을 가장 잘 심의 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재적 의원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분과위원 구성을 확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56조제4항)
- 나.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 개의 규정을 구성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으로 변경함 (안 제56조제5항)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5.5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sup>1)</sup><sup>2)</sup>과 '25.7월 도시재생위원회가 시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되고 2개 분과위원회로 개편<sup>3)</sup>됨에 따라 심의안건별 적합한 분과위원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과위원 구성 및 회의 추진 절차 등을 규정(안 제56조제2항 및 제4항)하고 회의 개의 및 의결 사항(안 제56조제5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56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p> <p>② <u>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u></p> <p>③ (생 략)</p> <p>④ <u>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제56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 ----- ----- ----- -----.</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과 분과위원 구성을 확정하고, 회의 일시, 장소 등을 구성된 분과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의 배포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 1)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도시계획 분야 심의위원회 통합 운영계획, 2025.3.4. (도시공간전략과-2122)
  - 건축 규제 완화 방안 마련 요청 [시장주재 비상경제회의(건설분야) '24.12.16.]
  - 도시계획 관련 다양한 위원회가 운영중이나 심의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 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5.19.>
- 3)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개편 세부 운영 계획, 2025.10. (도시계획과-11950)

<p>&lt;신 설&gt;</p> <p>⑤ · ⑥ (생 략)</p>	<p><u>⑤ 구성 분과위원(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구성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u></p>
---------------------------------------	--

## “개정안 검토”

### 1) 분과위원 구성 및 절차 명확화 (안 제56조제2항 및 제4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6조제2항 및 제4항은 도시재생위원회가 시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안건별 분과위원 구성 방법 및 회의자료 배포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56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p> <p>② <u>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u></p> <p>③ (생 략)</p> <p>④ <u>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제56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 ----- ----- ----- -----.</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과 분과위원 구성을 확정하고, 회의 일시, 장소 등을 구성된 분과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의 배포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sup>4)</sup>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sup>5)</sup>에 근거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주요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법정 자문 기구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8조<sup>6)</sup>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sup>7)</sup>에 따라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25.7월 서울시는 심의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위원회를 시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두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2개 분과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7)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 이에 따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시도시계획위원회 중 ‘신속통합 기획 등 정비사업 분과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 위원회’로 하고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위원회’로 개편하려는 것임

### < 도시계획 분야 심의위원회 통합 운영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30명)		
도시계획과 총괄운영		
1분과 (1단계 시행)	2분과 (1단계 시행)	3분과 (2단계 추후시행)
•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 공공정비사업	• 도시재생	• 재정비촉진
내부위원 2명	내부위원 2명	내부위원 2명
도시공간본부장(위원장) 주택실장	균형발전본부장(위원장) 도시공간본부장	주택실장(위원장) 도시공간본부장
시의원 2명	시의원 2명	시의원 2명
시의회 추천	시의회 추천	시의회 추천
외부위원 11명	외부위원 11명	외부위원 11명
분야, 임기 등 고려 배치	분야, 임기 등 고려 배치	분야, 임기 등 고려 배치

출처 :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도시공간전략과-2122)

-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수가 정해져 있음을 고려해 한정된 구성인원 안에서 분과위원회별로 고정된 분과위원을 두지 않고 회의 개최 시 상정 되는 안건의 성격과 전문성에 따라 해당 안건을 가장 잘 심의할 수 있는 위원으로 심의할 때마다 분과를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위원장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구성 분과위원을 확정 하여 회의일시·장소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심의 안건 및 관련 자료는 회의 5일 전까지 배포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원회 기능 통합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심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건별 분과위원 구성 방법에 대한 기준, 전문 분야별 참여 비율 등과 같은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요구됨

## 2) 구성 분과위원에 따른 회의 개의·의결 절차 마련 (안 제56조제5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6조제5항은 ‘구성 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한 분과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6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중 략)  <신 설>	제56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중 략)  <u>⑤ 구성 분과위원(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구성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⑤ · ⑥ (생 략)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 현행 조례는 정해진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분과위원 구성이 고정되지 않고 안건별로 변경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기존 규정의 적용은 정합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임
- 이에 따라 실제 회의에 참여하는 ‘구성 분과위원’을 기준으로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은 분과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이 회의마다 다르게 구성되는 만큼 위원 선정 및 분과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의 진행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겠음

##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과위원회 구성 방식을 안건별로 적합한 위원으로 유연하게 구성하고 회의 개의 및 의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회의 진행의 투명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6조제2항 및 제4항은 도시재생위원회가 도시 계획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안건별 분과위원 구성 방법 및 회의자료 배포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상정되는 안건의 성격과 전문성에 따라 해당 안건을 가장 잘 심의할 수 있는 위원으로 분과를 구성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하겠음
- 다만, 위원회 기능 통합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심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건별 분과위원 구성 방법에 대한 기준, 전문 분야별 참여 비율과 같은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요구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6조제5항은 ‘구성 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한 분과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회의에 참여하는 ‘구성 분과위원’을 기준으로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은 운영의 합리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함